

「우리WON CMA Note」 특약

제1조(약관의 목적)

이 특약은 우리종합금융(주)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와 고객과의 우리WON CMA Note(이하 “예금”이라 한다) 거래를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- ① 이 예금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을 수취인으로 하고 회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회사가 1년(365일) 이내의 약정된 수익률로 발행한 약속어음(이하 “발행어음”이라 한다)을 말합니다.
- ② 이 예금은 예수금 입금시 회사의 발행어음을 자동으로 매수하고, 출금시 당해 발행어음을 자동으로 매도하여 그 원리금으로 출금 요청액을 지급하며, 남은 금액은 발행어음으로 자동 재매수하여 거래되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상품입니다.
- ③ ‘자동매수’란 고객의 거래 신청에 따라 이 예금 계좌에 예수금이 입금되는 당일 회사가 정한 특정 시간에 발행어음을 매수처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④ ‘자동매도’란 고객의 거래 신청에 따라 이 예금 계좌에 출금 요청 시 매수한 발행어음을 자동으로 매도처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제3조(약정기간)

발행어음의 최장발행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(365일)입니다.

제4조(자동매수 단위 및 만기)

- ① 발행어음 자동매수 단위는 예수금의 10%금액과 50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하고, 50만원 미만 시에는 한 건으로 발행어음을 매수처리 합니다.
- ② 최장 예탁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(365일)이며, 만기일이 도래한 때 인출 요청이 없는 경우 재매수 당일 스마트뱅킹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예치잔액별 고시 금리가 적용됩니다.

제5조(자동매도 방식)

발행어음 자동매도는 출금 요청액 이상이 될 때까지 선 발행어음 분부터 건별로 매도처리되고, 그에 따라 매도원리금 합계가 출금 요청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자동매수 됩니다.

제6조(가입대상)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실명을 가진 개인으로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 (해지 후 재가입 가능)

제7조(가입방법)

이 예금은 우리종합금융 스마트뱅킹, 우리종합금융 스마트웹을 이용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.

제8조(가입금액)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.

제9조(기본이율)

- ① 이 예금은 가입일 당시 우리종합금융 스마트뱅킹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 예금의 잔액 한도별 금리를 적용합니다.
- ②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매일의 최종 예금 잔액에 대해 우리종합금융 스마트뱅킹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한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.

제10조(이자 계산)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다음 이자 결산기준일에 다음의 이자계산 방법으로 셈한 매일의 이자를 합하여 해당 이자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.
 1. 결산기준일: 매월 말일
 2. 이자원가일: 결산기준일 +5일 (매월 5일)
 3. 이자계산: 매일의 최종잔액 × 연이율 / 365
 4.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적용이율을 곱하고 평년 윤년에도 불구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한다.
-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전 이자결산기준일 익일부터 다음 이자결산기준일 또는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고시된 이율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.

제11조(세제 혜택)

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제12조(해지 방법)

이 예금은 스마트뱅킹으로만 해지가 가능합니다.

제13조(거래중지계좌의 편입)

이 예금은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출금 등의 거래가 없는 경우, 동 계좌는 거래중지 계좌로 편입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약정기간 도래에 따른 발행어음 재매수는 입출금 등의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.

제14조(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)

고객은 이 계좌를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.

제15조(제한사항)

- ① 이 예금은 비대면 전용상품으로 통장 발급이 불가합니다.
- ② 이 예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.
- ③ 이 예금은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기이용 계좌로 이용될 경우,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이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.

부칙

이 특약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.